

2003.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

질문위원	김희곤	소관부서	총무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
질문내용	지하식당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제출		

지하식당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제출하겠음

## 을숙도문화회관 지하식당 변경사용계약서

원본대조필

○ 재산의 표시

▷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-14번지 을숙도문화회관

- 전시관리동내 지하1층 전용면적 535.02m<sup>2</sup>, 공용면적 153.40m<sup>2</sup>
- 외부공간 230.03m<sup>2</sup> 및 주방비품 47종 49점

위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장을 “감”이라 하고 사용허가 받은자 부산캐터링씨비스(주) 대표(이용민)를 “을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용계약을 체결한다

**제1조(사용 목적)** 을숙도문화회관내 지하식당 사용에 의 한다

**제2조(사용 허가 기간)** 사용허가 기간은 2002년 10월 5일부터 2005년 10월 4일 까지로 한다. 단,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2005년 10월 4일 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사용료 및 납기)** ① 사용료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

1년차 사용료는 금 팔천오백육십일만팔백오십원(₩85,610,850)이며 계약금(계약시)은 금 칠백육십사만오천원(₩7,645,000)으로 2002년 8월 24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고, 변경전 잔금 금 칠천육백사십오만원(₩76,450,000)은 2002년 9월 23일 납부하였으며 시설사용 변경 부분에 대한 추가사용료는 1년차 사용료(₩85,610,850)의 10%인 9,160,850원은 2002년 10월 4일 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2년차 사용료와 3년차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연도 재산가액 ×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÷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매년 산정하되 납기는 당해연도 경과 전일로 한다.

**제4조(연체료율)** “을”이 납기내(계약일로부터 30일내)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리 15%의 연체료율을 일할 계산하여 년차별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선량한 관리자의 의무)** “을”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

“을”은 전항의 부담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.

**제6조(보험가입 의무)** “을”은 본 계약기간중 “갑”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

**제7조(금지사항)** “을”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
2.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
3.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4. 사용재산에 시설한 “을”的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

**제8조(계약의 해지)*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언제든지 “을”에 대하여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

1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~~필요한 때~~
2. “을”이 계약후 2개월이 경과 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매년도 사용료를 2개월이상 연체할 경우와 무단으로 시설물을 개·보수하거나 정당한 “갑”的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
3. 제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4. “을”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
5. “을”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한 때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“을”이 손해를 입을지라도 “갑”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“갑”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에 의거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

**제9조(손해배상)** 제8조제5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“갑”이 결정하고 “을”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**제10조(해약요구)** ① 본 계약 기간중에 “을”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갑”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여 그 정산금액을 반환한다.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“을”이 손해가 있을지라도 “갑”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원상회복)**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이 정하는 기한내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“갑”이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“갑”的 승인을 득한후 설치한 고정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변상금)** ① 사용기간 만료후에 “을”이 계속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120%의 변상금을 일할 계산하여 “을”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관리중 “을”의 관리 소홀로 시설물 파손, 도난시는 동일한 제품 또는 “갑”이 승인한 제품을 “을”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비용을 “갑”에게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조문 해석)** 본 계약조항에 있어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 “갑”的 해석에 따른다.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붙임 : 비품인수인계서 및 사용허가조건 각1부.

2002년 10월 30 일

사용허가자(갑)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



사 용 인(을)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9-1번지

부산캐터링써비스(주) 대표이사 이용민(인)

